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4호 2022. 12. 6.(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46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647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 조례 제2648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6
남해군 조례 제2649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제2650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남해군 조례 제2651호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2
남해군 조례 제2652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653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남해군 조례 제2654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9
남해군 조례 제2655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3
남해군 조례 제2656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남해군 조례 제2657호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41
남해군 조례 제2658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46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7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규칙	51
---------------	--	----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1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기획조정통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54
--------------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54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60
남해군 고시 제2022-155호	부운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63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475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지방도 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65
남해군 공고 제2022-1497호	군계획시설(힐링빌리지: 공원, 도로, 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68
남해군 공고 제2022-149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70
남해군 공고 제2022-1501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74
남해군 공고 제2022-1506호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매립장) 조성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77
남해군 공고 제2022-1525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지방도 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83
남해군 공고 제2022-1527호	2022년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 단체 선정 공고	85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646호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을 “영” 으로 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을 “영”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연도별	지 급 액
2023년	연21,422,280원(월1,785,190원)
2024년	2023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5년	2024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2026년	202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

남해군 조례 제2647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남해군” 을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남해군” 을 “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남해군” 를 “군”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를 각각 “따라” 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할 때에는” 를 “인정할 경우에는” 로, “권고할 수 있다” 를 “권고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 직원 또는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남해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및 제14조의2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해군” 을 “군” 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호 중 “남해군의회” 를 각각 “의회” 로, “전가” 를 “전가(轉嫁)”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남해군 또는 남해군의 산하기관” 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관계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기관

제15조제1항 중 “관계없이” 을 “관계 없이” 으로, “금품등” 을 “금품 등” 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해군” 을 각각 “군” 으로 한다.

제31조 중 “남해군” 을 “군”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5 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48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4의 규정에 의한” 을 “제8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회 의장” 을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 의장” 을 “의장”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 “의회에서 위촉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친자” 를 “자녀”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회의장” 을 “의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금고” 를 “남해군 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 로 한다.

제8조 중 “군수” 를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라 한다.

제9조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을 “제84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에” 를 “제4조에”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2조에 따른 의한” 을 “제1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한 사항” 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의회 공인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 중 “사무과장” 을 “의회사무과장”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장” 을 “남해군의회 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3조(「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해군의회” 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조까지 중 “남해군의회” 를 “의회” 로 각각 한다.

제4조(「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정의는”를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를 “제33조”로 한다.

제7조 중 “결과에 의거”를 “결과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정활동으로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를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제4조에 따른 남해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6조(「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서식에 의하여”를 “서식에 따라”로 각각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기준에 의하여”를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영”으로 하고, “각 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의2제5항”을 “영 제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를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의2호 중 “제18조제1항”을 “영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을 “영 제29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동조 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영”으로 하고, “ [별표 1] ”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7조에 의하여”를 “제7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장”을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복지제도에 의한”을 “복지제도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후생복지제도에 의한”을 “후생복지제도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장”을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9월 1일에 집회한다.”를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하고,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1조(「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로,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남해군의회”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의회” 를 “남해군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담당관, 과장급” 을 “실·과·단장급”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을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 과장” 을 “실·과·단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자치법」” 을 “법” 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의 개정)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장에관한조례” 를 “남해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을 “남해군의회 의원” 을 한다.

제2조 중 “의회장” 을 “남해군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중 “의원” 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으로, “의장” 을 “남해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으로, “결정에 의해” 를 “결정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회의장” 을 “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를 “별표” 로, “기준에 의한 소요 금액의 범위내에서” 를 “기준에 따른 소요 금액 범위에서” 로 한다.

제8조 제목 “기타 세부사항” 을 “그 밖의 세부사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49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장을 포함한다)”을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을 “정책기획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조(「남해군민의 날 조례」의 개정) 남해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담당 국장, 경제안전 담당 국장”을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으로 한다.

제8조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장”을 “부서장·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을 “부서장 및 읍면장”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를 “다문화가족 업무”로 한다.

제6조(「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 중 “투자유치담당 주사가”를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7조(「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팀장”을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농공지구 업무 담당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산업무 담당 국장, 건설업무 담당 국장”을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출산 장려 지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아이: 3백만원 · 일시금30만원, 매월15만원×18회 ○ 둘째아이: 4백만원 · 일시금40만원, 매월15만원×24회 ○ 셋째아이 이상: 10백만원 · 일시금200만원, 매월20만원×40회 	핵심전략 추진단
----------	-----------	------------------------------	---	----------

별표 1 중 다자녀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자녀 지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달부터 만6세 미만 ·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 최대 71개월까지 지원 	핵심전략 추진단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	조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기간: 2년 ○ 이용시설 · 노량거북선: 무료 · 국민체육센터(수영장,헬스장) : 50% 할인 	핵심전략 추진단

별표 2 중 전입지원의 영농정착 지원란, 남해사랑 우대인증 발급란, 종량제 봉투 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입 지 원	영 농 정 착 지 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전입자가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 세대당 100만원 범위에서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 지원 · 지원기간: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 · 지원횟수: 1회(세대당 1건에 한함)	경 제 과
	남 해 사 랑 우 대 인 증 급 발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우대기간: 2년 ○ 이용시설 · 노량거북선: 무료 ·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 : 50% 할인	핵 심 전 략 추 진 단
	종 량 제 봉 투 지 원	조례 제3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종량제봉투 지원 · 1인 전입 : 300리터 · 2인 이상 전입 : 600리터	환 경 과

별표 2 중 전입학생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 입 학 생 지 원	전 입 초·중·고 학 생 지 원	조례 제3조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남해화폐 지급 ·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핵 심 전 략 추 진 단
	전 대 지 입 학 생 지 원	조례 제3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만, 지원기간 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입대, 휴학, 자퇴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기숙사에 입주하는 경우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 (※학기별 30만원) ○ 기숙사 외에 입주하는 경우 · 지원횟수: 재학중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남해화폐 · 지원금액: 10만원 상당	핵 심 전 략 추 진 단

별표 3 중 결혼장려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혼장려지원지	주거자금대출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액: 주거자금 대출 이자 이율의 1.5%(최대 1백만원 한도) ○ 지원횟수: 연1회. 대상자별 1회에 한함. ○ 지원기간: 최장 3년 	핵심전략추진단
	혼금지원	조례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단, 부부 중 1명이 만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당 200만원(3회 분할) · 1회차: 최초 신청 시 100만원 · 2회차: 최초 지급일부터 1년 후 50만원 · 3회차: 최초 지급일부터 2년 후 50만원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핵심전략추진단

별표 3 중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지	어린이집 입소자 지원	조례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도별 경상남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 도액 중 입소 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1회) 	주민행복과
--------------	-------------	------------------------------	--	-------

별표 3 중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구증대 유공 인센티브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조례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명 이상 ~ 9명 미만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경우: 50만원 ○ 10명 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경우: 100만원 ※ 전입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입자 인원임 ※ 전입자는 조례 제3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핵심전략추진단
--------------	---------------	------------------------------	--	---------

제11조(「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부서장, 청소년교육 업무 부서장”을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업무 담당주사가”를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2조(「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을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의로운 군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5조(「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통합조사관리팀장”을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사업소장”을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한다.

제17조(「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직할시·도”를 각각 “광역시·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그 밖의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 을 “물품관리관”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청·소” 를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33조 중 “청·소” 를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18조(「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복지업무 부서장” 을 “자활 업무 부서장” 으로 한다.

제19조(「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업무” 를 “복지정책 업무” 로, “해양수산” 을 “해양발전”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업무” 를 “복지정책업무” 로, “해양수산” 을 “해양발전” 으로 한다.

제20조(「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을 “문학관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을 “문학관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21조(「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을 “군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22조(「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 을 “향토유적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23조(「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 을 “관광진흥” 으로 한다.

제24조(「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복지업무 부서장” 를 “교통약자 복지 업무 부서장” 로 한다.

제25조(「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물과장”을 “어항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6조(「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의 개정)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물과장, 체육진흥과장”을 “해양발전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27조(「남해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녹색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28조(「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해양수산업무”를 “해양발전업무”로 한다.

제29조(「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를 “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소”를 “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

제30조(「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물과장”을 “농축산과장, 해양발전과장”으로 한다.

제31조(「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양수산물과장”을 “수산자원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50호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민의 참여” 를 “남해군민의 참여” 로, “군민의 권익증진” 을 “남해군민의 권익증진”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군민의 권리·의무” 를 “남해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지 아니” 를 “생략 또는 단축”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 중 “입법안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례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

고를 생략 또는 단축하려고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법규 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제24조 중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51호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남해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 청사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③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유선 및 인터넷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2회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로 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나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담분야와 상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실 업무 및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④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법률상담관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률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률상담관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제9조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상담처리) 방문상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 상담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상담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상담관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상담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일지

상담 번호		상담 일자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확인
제20 - 호		20 . . .	(인)	(인)
신청인	성명	(남/여) (서명 또는 인)		
	거주지			
	연락처			
상담 분야				
상담 요청 내용			상담 처리 결과	

남해군 조례 제2652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홍현의 행정리별란 중 “홍 현1”을 “홍 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53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면 흥현리의 관할구역란 중 “흥현1”을 “흥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54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 등)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군의 출연금
2. 군의 보조 및 위탁금
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②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의 지정·고시가 완료된 날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계약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655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해군 소속 직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
 - 나. 공무원직근로자
 - 다. 기간제근로자
 -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마.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한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수행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폭행등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
 5.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 기준(제5조제2항 관련)

지 원 구 분	근 거	지 원 한 도	세 부 기 준
심리상담	제5조제1항제1호	상담 치료 연계	
의료비	제5조제1항제2호	예산의 범위 내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5조제1항제3호	1시간 범위 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부서장 판단으로 필요시 연장가능
법률상담	제5조제1항제4호	상담 연계	
소송비용	제5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	제5조제1항제7호	예산의 범위 내	

■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서식]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 명		연락처			
민원의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법률상담 <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신청의 경우				
	증빙자료	진단서, 영수증(진료비 및 약제비), 계약서 등				
확인자 (부서장)	직 위					
	성 명	(서명, 날인)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656호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657호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남해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 안전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불탄 찌꺼기(燃燒滓)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남해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 3.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 4.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비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 피해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비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처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남/여)	연락처
	주소		
화재 현황	화재일시		
	위치		
	피해정도 및 화재경위		
화재폐기물 처리내용	처리일시		
	처리업체명		
	처리비		
계좌정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다른 법령 등 지원 여부	※조례 제6조제2호 해당 여부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음·면장 확인란

신청인(피해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처리업체 발급) 1부.
- ② 화재증명원(119안전센터 발급) 1부.
- ③ 상속인 증빙서류(조례 제7조 제2항에 해당될 경우)

남해군 조례 제2658호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3조(지원기준)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사람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하여 별지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 한 경우 수급자는 남해군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6조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관리) 예방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접종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신청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대상포진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
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해군 _____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 접종자 현황

접종자 이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방접종 신청현황

발급기관		발급일	
접종기간	발급일부터 7일간 유효함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보건소 문의

남 해 군 수

남해군 _____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인증

○ 접종자 현황

접종자 이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예방접종 신청현황

발급기관		발급일	
접종기간	발급일부터 7일간 유효함		

※ 예방접종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지원불가 보건소 문의

남 해 군 수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217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업무”를 “복지정책업무”로 한다.

제2조(「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담당관·과”를 “부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군의 직속기관

제3조(「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남해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담당관·과·소·읍·면”을 “부서·읍·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담당관·과·소·읍·면장”을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남해군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의 개정)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본청의 국장, 부서장과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제6조(「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를 “직속기관” 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직속기관·사업소의장,” 을 “직속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7조(「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남해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해양수산업무” 를 “해양발전업무”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1호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기획조정통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기획조정통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을 공포한다.

2022년 12월 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 기획조정통제 규정 등 일괄개정훈령

제1조(「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의 개정) 남해군기획조정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조정 업무 담당 부서장”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팀장, 감사담당”을 “정책기획 업무 담당 팀장, 감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담당관·과·소 에서 소속 담당관·과장·소장”을 “부서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소”를 각각 “부서”로 한다.

제8조 중 “정책기획팀장, 감사담당”을 “정책기획 업무 담당 팀장, 감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한다.

제2조(「남해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의 개정) 남해군 군수 선거공약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선거공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선거공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선거공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선거공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선거공약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남해군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의 개정) 남해군예산집행심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담당관·과장·소장”을 “본청의 부서장과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담당관·과장·소장”을 각각 “부서장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조(「남해군 일상감사 규정」의 개정) 남해군 일상감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남해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법무행정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를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장·소장으로부터”를 “부서장으로부터”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당해 담당관·과장·소장”을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장”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당해 담당관·과장·소장”을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업무주관담당관·과장·소장”을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소장”을 “부서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의”를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의”로, “기획 예산담당관이”를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관·과·소”를 “부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법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한다.

제7조(「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관·과장·소장이 되며, 담당관·과장·소장이 없는 기관에서는 담당”을 “부서장이 되며, 읍·면에서는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남해군읍면행정실적심사규정」의 개정) 남해군읍면행정실적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소장” 을 “부서장” 으로 한다.

제14조 중 “담당관·과장·소장” 을 각각 “부서장” 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행정자료실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행정자료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각 담당관·과장·소장” 을 “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 를 “본청·직속기관”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소장” 을 “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립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규정」의 개정) 남해군립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청년혁신과장” 을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10조 중 “평생교육팀장” 을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의 개정) 남해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 를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 민원업무처리 전결규정」의 개정) 남해군 민원업무처리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 를 “및 직속기관” 으로 한다.

제4조 중 “담당관·과, 직속기관” 를 “부서 및 직속기관” 로, “담당관·과, 직속기관” 를 “부서 및 직속기관” 로 한다.

제16조(「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민원공개법정배심원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담당 담당관·과장·소장” 을 “민원주무부서의 장” 으로, “담당관·과장 등” 을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담당 담당관·과장·소장” 을 “민원주무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담당 담당관·과장·소장” 을 “민원처리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17조(「남해군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의 개정) 남해군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실·과장” 을 “장” 으로 하고, “(민원봉사과장)” 을 “(민원주무부서의 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주무)부서의 장(담당관·과장)이” 를 “민원사무처리부서의 장” 으로, “(민원봉사과장)” 을 “(민원주무부서의 장)” 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를 “민원주무부서에서” 로 한다.

제18조(「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의 개정) 남해군건설공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소장” 을 “부서장” 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재무과장” 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재무과장” 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19조(「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의 개정) 남해군설계심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을 “감사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지역활성·환경녹지·문화관광·건설교통·해양수산과장” 을 “재무·경제·환경·관광·건설·해양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20조(「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의 개정) 남해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 을 “택시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교통지도팀장” 을 “택시 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21조(「남해군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의 개정) 남해군어업지도선관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양수산과장” 을 “어업지도선 업무 담당 부서장” 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어업지도팀장” 을 “어업지도선 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22조(「남해군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의 개정) 남해군 민방공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본문 중 “재난총괄과장이” 를 “재난안전과장” 으로 한다.

제23조(「남해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의 개정) 남해군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소장” 을 “부서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2-154호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남 해 군 수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706,858,662	684,726,435	22,132,227	3.23%
일 반 회 계	603,746,775	581,002,567	22,744,208	3.91%
특 별 회 계	103,111,887	103,723,868	△611,981	△0.59%
상수도특별회계	28,948,474	28,949,693	△1,219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55,195	781,731	△26,536	△3.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54,831	254,831	0	0.0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5,079,717	35,663,943	△584,226	△1.64%
청사건립특별회계	38,073,670	38,073,670	0	0.00%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603,746,775	581,002,567	22,744,208	3.91%
지방세 수입	27,039,840	26,439,820	600,020	2.27%
지방세	27,039,840	26,439,820	600,020	2.27%
세외수입	25,202,231	21,953,566	3,248,665	14.80%
경상적세외수입	11,748,026	9,618,325	2,129,701	22.14%
임시적세외수입	12,806,165	11,846,841	959,324	8.10%
지방행정제체·부과금	648,040	488,400	159,640	32.69%
지방교부세	279,684,969	271,809,969	7,875,000	2.90%
조정교부금등	33,179,576	27,850,350	5,329,226	19.14%
보조금	195,332,824	192,251,848	3,080,976	1.60%
국고보조금등	147,363,270	146,602,650	760,620	0.52%
도비보조금등	47,969,554	45,649,198	2,320,356	5.0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307,335	40,697,014	2,610,321	6.41%
보전수입등	33,609,077	30,998,756	2,610,321	8.42%
내부거래	9,698,258	9,698,258	0	0.00%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합계	103,111,887	103,723,868	△611,981	△0.59%
지방세				
세외수입	5,146,723	4,731,453	415,270	8.78%
경상적세외수입	4,773,093	4,375,093	398,000	9.10%
임시적세외수입	151,163	133,893	17,270	12.90%
지방행정제체·부과금	222,467	222,467	-	0.00%
지방교부세	500,000	-	500,000	순증
보조금	26,300,459	26,381,966	△81,507	△0.31%
국고보조금등	18,110,208	18,737,613	△627,405	△3.35%
도비보조금등	8,190,251	7,644,353	545,898	7.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164,705	72,610,449	△1,445,744	△1.99%
보전수입등	2,352,136	2,352,136	-	0.00%
내부거래	68,812,569	70,258,313	△1,445,744	△2.06%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교
합 계	603,746,775	581,002,567	22,744,208	3.91%
인 건 비	61,756,986	61,732,956	24,030	0.04%
물 건 비	34,932,246	35,001,842	△69,596	△0.20%
경 상 이 전	189,317,155	190,724,484	△1,407,329	△0.74%
자 본 지 출	201,075,498	188,859,197	12,216,301	6.47%
융 자 및 출 자	14,420	14,420	-	0.00%
내 부 거 래	104,904,986	90,698,217	14,206,769	15.66%
예 비 비 및 기 타	11,745,484	13,971,451	△2,225,967	△15.93%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교
합 계	103,111,887	103,723,868	△611,981	△0.59%
인 건 비	2,614,367	2,612,637	1,730	0.07%
물 건 비	5,865,265	5,866,742	△1,477	△0.03%
경 상 이 전	7,581,943	7,633,742	△51,799	△0.68%
자 본 지 출	52,966,189	54,159,205	△1,193,016	△2.20%
융 자 및 출 자	9,709	22,131	△12,422	△56.13%
내 부 거 래	33,000,000	33,000,000	-	0.00%
예 비 비 및 기 타	1,074,414	429,411	645,003	150.21%

남해군 고시 제2022-155호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2차)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3.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구도생생회관 신축 : 주민공동이용시설 1식(1층 신축, 연면적 A=241.51㎡), 개수대 1식(A=47.58㎡)
 - 친환경 생태주차장 조성 : A=1,809㎡
 - 지역소득증대
 - 별천지 캠핑장 조성 : 캠핑 사이트 30개면, 기타 전기 등 부대시설 1식
 - 지역경관개선
 - 해안생생로드 조성 : 횡단보도 1식, 갯벌체험장 진입로 1식
 - 지역역량강화 : 교육, 컨설팅, 정보화 구축

4. 총 사업비

- 당초 : 1,720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648) *자부담 57.6백만원 별도
- 변경 : 1,920백만원(국비 72, 지방비 1,848) *자부담 57.6백만원 별도

5. 사업기간 : (당초) 2019년 ~ 2022년 (4년간) → (변경) 2019년 ~ 2023년 (5년간)

6.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부윤리 부윤2마을 일원

7. 사업의 효과 : 부윤2 마을의 정주여건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소득증대 추진으로 지속적인 마을 발전 도모

8.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9. 시행계획 열람 장소 : 세부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2-1475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 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남 해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선구리 1146-2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굴곡도로 개량공사
 - 명 칭 : 지방도1024호선 선구지구 굴곡도로 개량공사
- 다. 사업량 : L=190m, B=6.5m(8.5)
-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2. 11. 21. ~ 12. 5. (14일간)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도1024호선(선구지구골곡도로)개발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군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남해	남	선구	1168-1		전	168	168	김*중	남해군 남면 선구리 1**6	김*열	부산시하구 하신번영로 233, ***동***호(하단동,기력타운)		재산세납부
소 계				합계			168	168						

남해군 공고 제2022-1497호

군계획시설(힐링빌리지 : 공원, 도로, 주차장)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추진한 군계획시설사업(힐링빌리지:공원,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1, 공사완료사업

시설명	공사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교통시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중로2-6)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A=2,289.7㎡(2,297㎡) (B=6m, L=136m)	2019. 5. 2. ~ 2022. 12. 31.	
교통시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소로2-127)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A=1,253.9㎡(1,255㎡) (B=8m, L=157m)	2019. 5. 2. ~ 2022. 12. 31.	
교통시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소로2-128)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A=2,132.4㎡(2,133㎡) (B=8m, L=260m)	2019. 5. 2. ~ 2022. 12. 31.	
교통시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소로3-49)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A=170.6㎡(170㎡) (B=4m, L=42m)	2019. 5. 2. ~ 2022. 12. 31.	
교통시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주차장)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A=5,256.9㎡(5,331㎡)	2020. 3. 5. ~ 2022. 12. 31.	
공간시설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소공원)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A=301㎡(301㎡)	2019. 5. 2. ~ 2022. 12. 31.	

※ (괄호) 면적은 확정측량 전 실시계획인가 최종고시 면적

2. 준공도면 : 도면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 관광진흥과 관광프로젝트팀

4.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055-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2-149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고사~동비(지방도102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남 해 군 수

- 사 업 명 : 고사~동비(지방도1024호선) 도로확포장공사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열람기간 : 2022. 11. 25. ~ 2022. 12. 10.(15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3314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붙임 참조
- 의견제출기간 : 2022. 11. 25. ~ 2022. 12. 10.(15일간)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토 지 평 가 조 서

* 지방도1024호선(고사~동비) 도로확포장공사

원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당초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분	주소	성 명
		분할전	분할후						
1	설천면 진목리	930-4	930-8	대	155.0	53.0	지분30 분의3	파주시 조리읍 전지미말길93	윤*자
2	설천면 진목리	807-4	807-6	대	108.0	45.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282	정*조
3	설천면 진목리	925-2	925-4	대	546.0	72.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287	박*주
4	설천면 진목리	1735	1735-1	답	2,026.0	53.7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298-1	임*덕
5	설천면 진목리	808-1	808-6	대	443.0	46.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286	유*준
6	설천면 진목리	836-5	836-7	전	327.0	55.0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566-1	정*홍
7	설천면 진목리	829-1	829-5	대	146.0	33.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298-1	박*호
8	설천면 진목리	828	828	답	212.0	6.0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298-1	박*호
9	설천면 진목리	1043-1	1043-5	대	102.0	8.0		양산시 물금읍 백호2길28-7	박*수
	합 계				3,963				

물 건 평 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비 고	비 고
			주택	블럭스레트	41 m ²	윤*자	지분30분의3
			창고1	블럭스레트	2 m ²	윤*자	지분30분의3
			창고2	블럭스레트	19 m ²	윤*자	지분30분의3
			창고3	블럭스레트	21 m ²	윤*자	지분30분의3
			대문	철재	1 식	윤*자	지분30분의3
			바닥포장	콘크리트 (2*2+2*5)	14 m ²	윤*자	지분30분의3
2	설천면 진목리	807-4	주택	블럭스레트	57 m ²	정*조	
			창고	블럭슬라브	29 m ²	정*조	
			담장	블럭조 (7*1.2(H))	8 m ²	정*조	
			바닥포장	콘크리트 (4*4*1/2)	8 m ²	정*조	
			우물		1 식	정*조	
			주거이전비			정*조	
			이사비			정*조	
			이주정착금			정*조	
3	설천면 진목리	808-1	주택 및 창고 등	벽돌 슬라브	92 m ²	유*준	
			창고	블럭스레트	3 m ²	유*준	
			대문	벽돌슬라브 (새시)	1 식	유*준	
4	설천면 진목리	1043-1	대문	메쉬 (L:3)	1 식	박*수	
			담장	블럭조 (4.5*1.5(H))	6.75 m ²	박*수	
5	설천면 진목리	925-2	대문	철재 (L:4)	1 식	박*주	
			담장	블럭조 (8*1.8(H))	14 m ²	박*주	

물 건 평 가 조 서

Page : 3

일련 번호	소재지 (남해군)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량	비 고	비 고
			바닥포장	콘크리트 (9*5)	45㎡	박*주	
6	설권면 진목리	829-1	종려나무	R30	3주	박*호	
			동백	R15-20	6주	박*호	
			철쭉	H1 W1	4주	박*호	
			비파	R5	1주	박*호	
			감나무	R10	1주	박*호	
			매실	R10	2주	박*호	
			남천	H2	1군	박*호	
합 계							

남해군 공고 제2022-1501호

공시송달(보상협의)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사업의명칭 : 큰양아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 4. 공고기간 : 2022년 11월 24일 ~ 2022년 12월 10일
 -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 11. ~ 2022. 12.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 (T: 055-860-3293, F: 055-860-3727)

6.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붙임]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부				
상주면 양아리	산291-2	임	19.0	박*운	박*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809	전	112.0	미등기		
	산289-2	임	880.0	김*주	김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김강*	전라북도 정읍시

남해군 공고 제2022-1506호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매립장)조성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조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5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 2025년 완공예정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조성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1840 일원	52,797㎡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가. 열람기간 : 2022. 11. 25. ~ 2022. 12. 9. (14일간)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청 환경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87

(T : 055-860-3278, F : 055-860-3707)

다. 열람사항 : 사업인정 관계서류(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조서(붙임참조)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환경과(☎055-860-3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처리장(매립장)조성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조성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1	2	전	131	13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5	1	전	742	74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6	1	전	486	48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7		전	875	87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7	1	전	556	55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7	2	전	60	6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8		전	572	57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49		전	476	47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0	1	전	265	26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1	1	전	463	46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2		전	443	44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3	2	천	2,416	2,41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4	1	도	766	76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5		답	1,359	1,35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6		전	803	80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7		전	205	20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8		전	248	24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59	1	전	414	41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7		답	574	57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7	1	답	570	57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8		답	737	73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69		답	734	73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0		전	367	36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1		전	456	45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2		전	866	86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2	1	묘	30	3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3		답	641	64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4		답	641	641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조성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5	1	전	602	60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5	2	묘	288	28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6		전	238	23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7		전	486	48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8		전	169	16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79		전	132	13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0	1	전	471	47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1	1	전	556	556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2	1	전	37	3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3		전	321	32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4		전	648	64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5		답	1,140	1,14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6		전	288	28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487		전	764	76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39	2	잡	41	4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39	4	도	183	18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0		목	2,644	2,64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0	1	목	532	53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0	2	목	131	13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1		답	770	77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2	3	답	555	55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3	1	전	432	43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4	1	전	912	91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5	1	전	111	111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6	4	전	352	35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9	12	답	724	724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2	7	임	1,180	1,180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2	8	임	4,149	4,149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2	10	임	958	958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5	1	임	502	502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남해군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조성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6	1	임	224	224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6	2	임	285	285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7	3	임	409	409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7	4	임	514	514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9	1	임	5,626	5,626	
	남해	남해읍	평현리	산 309	2	임	4	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793	1	답	7	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795	1	전	653	65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797	1	전	32	3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798	1	전	5	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799	1	전	74	7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00	1	전	144	14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03	2	답	487	48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04	1	답	33	3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05	1	구	53	5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06	1	답	694	69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07	1	답	422	422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42	4	도	8	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6	2	전	819	81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6	5	도	13	13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7	2	전	257	257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7	3	도	48	4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9	10	답	75	75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9	7	답	80	80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59	8	답	289	28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60	1	답	199	199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61	1	전	174	17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66	2	전	128	128	
	남해	남해읍	평현리	1867	1	전	44	44	
	남해	남해읍	평현리	1931	2	임	27	27	

남해군 공고 제2022-1525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 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선사업」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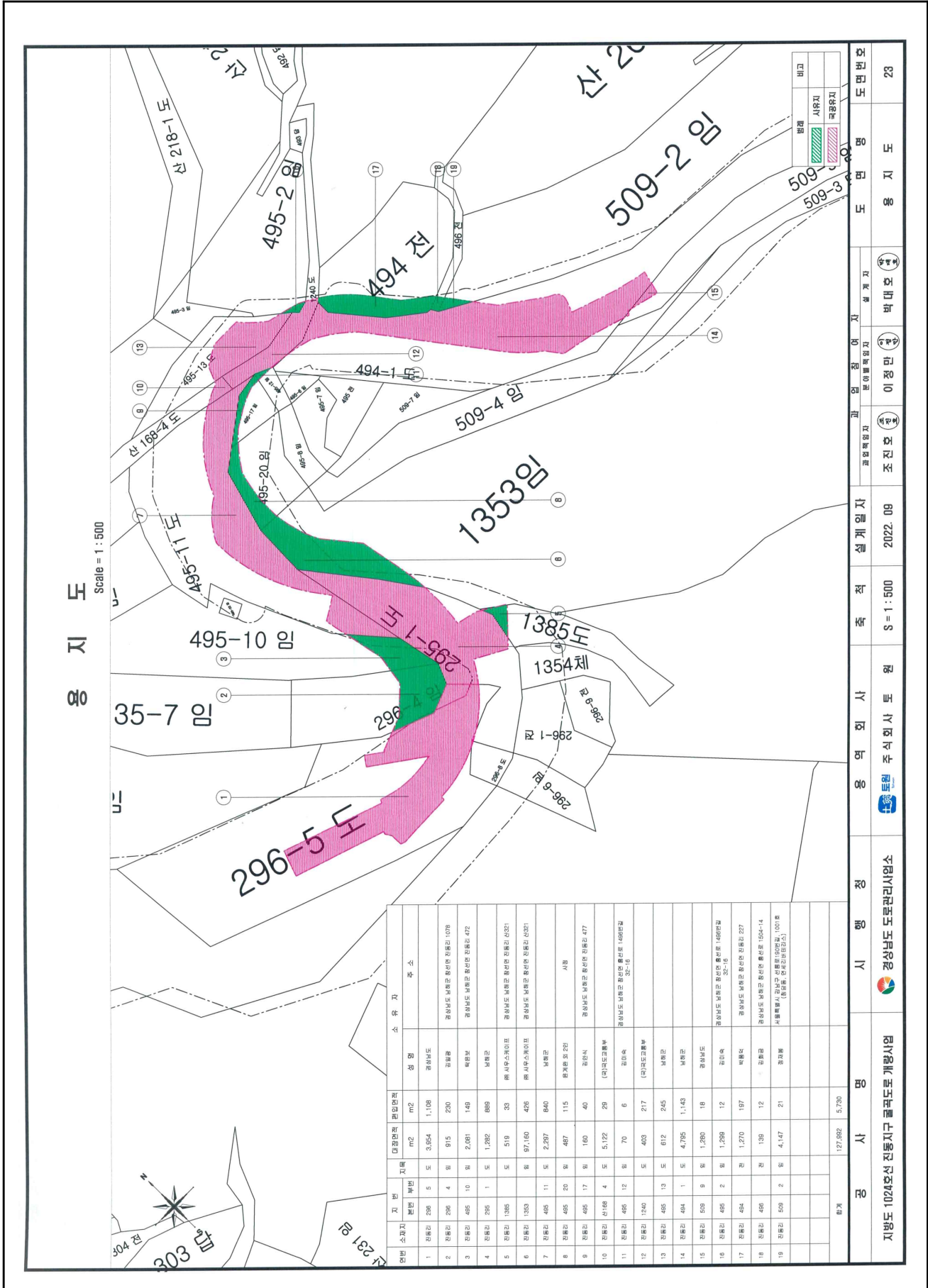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94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굴곡도로 개량공사
 - 명 칭 : 지방도1024호선 진동지구 굴곡도로 개량사업
- 다. 사업량 : L=342m, B=10.8m
-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열람장소 비치

2. 열람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14일간, 남해군 건설교통과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가. 제출기간 : 2022. 12. 1. ~ 12. 15. (14일간)
- 나. 제출방법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로 의견서 제출
- 다. 기타 상세하게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055-860-3314, 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지자	지번	면적	지목	지번	소유자	주소
1	김태관	296 5 도	3,954	농지	296-5도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1078
2	김태관	296 4 호	915	농지	296-4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3	김태관	495 10 호	2,081	농지	495-10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4	김태관	295 1 호	1,282	농지	295-1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5	김태관	1385 도	519	농지	1385도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6	김태관	1353 도	97,160	농지	1353도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7	김태관	495 11 호	2,297	농지	495-11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8	김태관	495 20 호	487	농지	495-20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9	김태관	495 17 호	160	농지	495-17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0	김태관	산168-4도	5,122	농지	산168-4도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1	김태관	495 12 호	70	농지	495-12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2	김태관	1240 호	403	농지	1240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3	김태관	495 13 호	612	농지	495-13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4	김태관	494 1 호	4,795	농지	494-1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5	김태관	509 8 호	1,286	농지	509-8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6	김태관	495 2 호	1,299	농지	495-2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7	김태관	494 호	1,270	농지	494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8	김태관	498 호	139	농지	498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19	김태관	509 2 호	4,147	농지	509-2호	김태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472
합계							127,662 5,720

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	시 행정청	경상남도 도관리서무소	용역회사	주식회사 도원	축적	S = 1:500	설계일자	2022. 09	조진호	이정민	박대호	도면번호	23
------	-------------	-------	-------------	------	---------	----	-----------	------	----------	-----	-----	-----	------	----

남해군 공고 제2022-1527호

2022년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 단체 선정 공고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2023년~2027년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 단체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 해 군 수

1. 선정기준

가. 근거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8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나. 선정방법

-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기관·단체 중 남해군해수욕장협의회 의결로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
- ▶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관하여 남해군 의회의 동의를 득한 단체

2. 선정결과

가. 선정일자: 2022. 11. 11.

나. 동의일자: 2022. 11. 22.

다. 선정결과

연번	해수욕장명	수탁단체	기간	비고
1	상주은모래비치	상주번영회	2023.1.1.~ 2027.12.31.	
2	송정솔바람해변	송정번영회	2023.1.1.~ 2027.12.31.	
3	설리해수욕장	설리번영회	2023.1.1.~ 2027.12.31.	
4	두곡·월포해수욕장	두곡번영회	2023.1.1.~ 2027.12.31.	
		월포번영회	2023.1.1.~ 2027.12.31.	
5	사촌해수욕장	사촌마을회	2023.1.1.~ 2027.12.31.	